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KICD) 선거 관리 규정

1.2 차기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이하 KICD) 정관 제 3장에 따라 차기 회장 및 감사를 민주적으로 선출함으로써 KICD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 관리 위원회)

(1) 차기 회장과 감사 선출을 위한 제반 업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KICD 내에 선거 관리 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2) 선관 위원장과 위임의 임기는 특별히 규정을 두지 아니하되, 단 그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은 새 선관 위원장을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 정족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명한다. 단 회장 궐위 시 상임 자문 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3) 선관 위원은 선관 위원장이 임명하되 KICD의 임원 조직과 별도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4) 선관 위원이 임원이 될 경우에는 선관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이때 선관 위원장은 부족한 선관 위원을 즉시 선임하고 이 내용을 회장에게 통보한다.

(5) 선관 위는 선거 규정의 범위 내에서 선거 관리에 필요한 시행세칙을 다수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참관인)

(1) 선관 위원장은 선거권을 가진 회원 중에서 약간 명의 참관인을 위촉한다.

(2) 선관 위원장은 경선 중인 각 후보 측을 대표할 수 있는 각 2인 이내의 회원을 선거에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차기 회장의 자격)

KICD의 창립 정신을 존중하며, 디자인계의 발전에 관심과 경륜을 갖춘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아래내용을 중심으로 상임자문회의 심의를 거친다. 단, 선거일 현재 회장직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1) 전문적 지식, 경험,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학회의 경영을 잘할 수 있는 자

(2) 학회 운영에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본 학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적 역량을 갖춘 자

제5조(감사의 자격)

KICD의 창립 정신을 존중하며, 디자인계의 발전에 관심과 경륜을 갖춘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는 감사의 자격이 있다.

(1)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학회의 경영을 진단할 능력이 있는 자

(2)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KICD의 발전상을 제시할 수 있는 자

제6조(선거권)

KICD의 정회원으로서 회비 완납자(선거일 기준으로 15일 전)는 선거권을 갖는다. 단, 단체 회원, 고문은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제7조(선거일 및 선거 공고)

(1) 현 회장의 임기 만료 1년 전의 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2) 감사의 궐위 시(사퇴, 사고) 잔여 임기에 관계없이 감사의 보궐 선거를 실시하고, 잔여 임기를 마친다.

(3) 선거 공고는 적어도 선거일 30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차기 회장 및 감사 선거)

(1) 차기 회장 후보는 선거 3개월 전까지 선관위에 회장 입후보할 수 있다.

(2) 상임 자문 회의에서도 선거 2개월 전에 차기 회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3) 후보 중에서 단기명 비밀 투표 방식으로 투표하여 과반수 득표 자를 차기 회장으로 선출한다.

단 1차 투표로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상위 2인에 대하여 2차 투표하고, 다수 득표자를 차기회장으로 선출한다. 또한 단독 후보일 경우 찬반투표를 하거나 추대로 선출할 수 있다.

(4) 득표 수가 같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고 재투표 결과도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차기 회장 혹

은 감사로 한다.

(5) 감사 선출과 임원 선임은 현 회장 임기가 만료되는 당해 연도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9조(산회 불가)

(1)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후보 선출 총회를 산회할 수 없다.

(2)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투표를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길 경우 선거 관리 위원장은 선거를 연기하고 선거가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다시 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소견 발표)

(1) 상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차기 회장 후보자는 본 선거에 앞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2) 소견 발표는 구두로 하되, 선관위에서 사전에 작성된 서면 질의가 있다면 이에 대한 소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감사의 경우는 소견 발표를 하지 않는다.

제11조(선거 결과 발표)

선관 위원장은 선출된 차기 회장 혹은 감사를 개표 직후 지체 없이 발표하고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출판되는 학회보나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등으로 그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KICD 회칙 제43조에 준한다.

제13조(경비)

선거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KICD의 예산에서 충당한다.

제14조(업무 협조)

선관위로부터 선거 사무에 관한 협조를 요청 받은 관계 임원 및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이외의 규정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관례에 따른다.

제2조 이 규정은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제3조 이 규정은 확정된 날(2019. 1. 29.)로부터 시행한다.

차기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 규정 시행 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차기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 규정에 의하여 차기 회장 및 감사 선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 관리 위원회)

- (1) 선거 관리 위원회는 선관 위원장이 5인 이내의 선관 위원을 임명함으로써 구성된다.
- (2) 선관 위 의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선관위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선거 규정의 해석

선거 업무 집행 관할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서면 질의서 작성

선거에 관한 업무 협조 의뢰

투개표 관리

선거에 관한 이의 신청 심의 및 결정

기타 선거에 관련된 사항

제3조(선거 공고)

선관위는 선거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고, 선거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1) 선거 일시
- (2) 당선자 공고
- (3) 기타 선거에 관련된 사항

제4조(선거 장소 관리)

선거 장소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선관 위원장은 투표 개시 선언과 함께 선거 장소 관리 위원,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 개표 위원과 검표 위원을 선정 발표한다.
- (2) 투표장은 선거 장소 내에 둔다.
- (3) 모든 선거 절차는 선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4)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선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퇴장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차기 회장의 소견 발표)

- (1) 소견 발표의 순서는 추첨으로 한다.
- (2) 소견 발표 시간은 10분 이내로 한다.
- (3) 소견 발표 시 후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언행을 삼가야 하며, 사퇴의 발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소견 발표의 내용은 녹음 또는 문서로 보관한다.

제6조(투표 용지)

- (1) 투표 용지의 양식은 선관위가 정한다.
- (2) 투표 용지는 KICD의 직인 혹은 선관 위원장의 사인이 있어야 한다.

제7조(투표 용지의 교부)

투표장에서 선관 위원은 선거권자의 선거인 명부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여 날인(또는 서명)토록 한 뒤 투표 용지를 교부한다.

제8조(기표소)

기표소는 기표를 할 수 있는 용구를 비치하고, 기표소는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제9조(개표)

- (1) 선관 위원장은 지정된 장소에 투표함을 모아 개표를 선언한 다음 개표 참관인을 배석시켜 개표 한다.
- (2) 개표 참관인은 개표 과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선관 위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무효 표)

다음의 투표 용지는 무효로 한다.

- (1) KICD의 직인 혹은 선관 위원장의 사인이 없는 투표 용지
- (2) 후보자의 성명이 오기된 투표 용지
- (3) 1명 이상의 후보자가 기명된 투표 용지
- (4) 기타 선관 위가 무효로 판정한 투표 용지

제11조(당선자 발표 및 공고)

(1) 선관 위원장은 개표 종료 후 당선자를 확정 발표한다.

(2) 선관 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 선거일 이후 가장 가까운 시일에 발행되는 학회보나 홈페이지, 메일 등으로 그 결과를 공고한다.

선거 일시 및 장소

차기 회장의 소견 발표 내용

선거 절차 및 결과

제12조(개정)

본 세칙의 개정은 정기 총회 참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부칙

제1조 본 세칙은 확정된 날(2019. 1. 29.)로부터 시행한다.